

# 韓半島 周邊水域의 國際漁業關係와 그 展望

李 秉 鎰·崔 宗 和  
(釜山水產大學校)

## I. 序 論

韓半島 周邊水域은 세계 三大漁場 중에서도 最大漁場인 北太平洋의 남서쪽 변두리에 위치하여 비교적 水産資源이 풍부하며, 또 이 水域의 沿岸國들은 대부분 牧畜業이 크게 발달할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수산물을 動物性 蛋白質 食糧의 주요 供給源으로서 이용하여 왔고, 경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그 需要 또한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漁業分野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國際漁業關係는 전반적인 海洋法秩序의 일부로서 파악되어야 하고, 海洋管轄權의 문제는 國際政治의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에 관하여 국제적인 利害關係가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東北亞水域의 지리적인 중심에 韓半島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자체가 분단되어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周邊水域에 있어서의 國際漁業關係가 合法的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韓半島 周邊水域은 半閉鎖海(semi-enclosed sea)를 형성하고 있으며, 中國, 蘇聯, 日本 등 3大強國이 그 외측을 포위하고 있음으로써 이 水域의 지배를 통한 세력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각국의 排他的인 海洋政策으로 인하여 漁業關係에도 海洋管轄權 문제와 결부되어 잠재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이다.

韓國으로서는 國際漁業問題의 법적 해결에 있어서 對向國인 中國 및 蘇聯과는 여태껏 정식 外交關係가 없었으므로 政府次元의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隣接해 있는 北韓과는 南北韓間의 기본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日本과는 1965년에 체결된 韓日漁業協定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漁業關係가 유지되어 오기는 했으나, 海洋法秩序에 입각하여 漁業問題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역시 많은 難題가 가로 놓여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각국의 排他的 經濟水域 선포 현황과 국가간의 漁業關係를 관련지워 고찰함으로써 韓半島 周邊水域(주로 東海와 黃海)에 있어서의 國際漁業의 力學關係를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장차 UN海洋法協約의 발효와 본격적인 對中·蘇 및 南北韓 교류 협력에 대비한 漁業分野 政策樹立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周邊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와 그 影響

韓國은 현재까지 1982년의 UN海洋法協約의 취지에 따른 排他的 經濟水域을 국제적으로 선포하거나 國內法 제정을 통하여 국내적으로 공포한 바 없다. 다만 1952년 「隣接海洋의 主權에 대한 大統領宣言」의 내용 중에 經濟水域과 유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排他的 經濟水域의 개념은 1973년부터 개최된 제3차 UN海洋法會議 진행 과정에서 성립된 것이므로 1952년에 經濟水域을 선포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韓國의 經濟水域은 합법적으로 설정된 바 없으며, 中國도 經濟水域을 선포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韓半島周邊의 沿岸國 중에서 蘇聯과 北韓이 선포한 排他的 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EEZ)과 日本이 설정한 排他的 漁業水域(exclusive fishery zone: EFZ)의 제도의 이것들이 域內의 國際漁業關係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蘇聯의 排他的 經濟水域

韓半島 周邊水域에 있어서 各沿岸國의 200해리 排他的 管轄水域은 1976년 12월 蘇聯이 EFZ(후에 EEZ로

변경함)를 선포하고 익년 3월부터 시행한 것에서 비롯된다. 원래 蘇聯은 海洋國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美國의 EEZ 설정을 반대하였으나 1976년 11월 美蘇漁業交渉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럽 공동체(EC)가 200해리 共同經濟水域을 설정하기로 결의하자 여태까지 북부 대서양에서 연간 457만M/T(1973년치)의 어획을 올리던 蘇聯으로서의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自救策으로서 自國漁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海洋政策을 전환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蘇聯은 1950년대까지는 漁業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고 1960년의 漁獲量은 300만M/T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후 動物性蛋白質 食糧資源으로서의 水産物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됨으로써 1970년에는 漁獲量이 725만M/T으로 늘어나 세계 2위가 되었다. 더우기 1974~75년에 걸쳐서는 農作物의 대흉작으로 飼料가 부족하여 가축이 대량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水産物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漁業開發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어쨌든 蘇聯의 EEZ 선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는 日本이었고, 韓國도 1970년대부터 조업하던 감차카반도 周邊水域으로부터 트롤선들이 전면 축출되어 타격이 컸다.

## 2. 北韓의 排他的 經濟水域

北韓은 1977년 6월 자체의 바다 자원을 보호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하여 200해리 EEZ를 中央人民委員會政令으로 선포하고, 동년 8월 1일을 기하여 발표되도록 하였다. 이는 1976년 12월 蘇聯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였고, 1977년 6월 韓日間에 大陸棚協定이 체결되었으며, 1977년 7월에 日本이 200해리 EFZ를 선포하는 등 周邊各國이 일련의 海域保護措置를 취한 것에 대한 對抗要件을 확고히 하려는 데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동년 8월 1일 人民軍最高司令部 명의로 EEZ를 보호하고 민족적 이익과 自主權을 군사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領海基線으로부터 50해리에 이르는 수역에 軍事境界水域을 설정하고, 그 水域內의 水上·水中·上空에서의 外國의 軍用船舶 및 航空機의 行동을 금지시켰으며, 私用的 船舶과 航空機는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 또는 승인 하에서만 航海 및 飛行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먼저 선포한 200해리 EEZ의 발효와 관련하여 이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水域의 범위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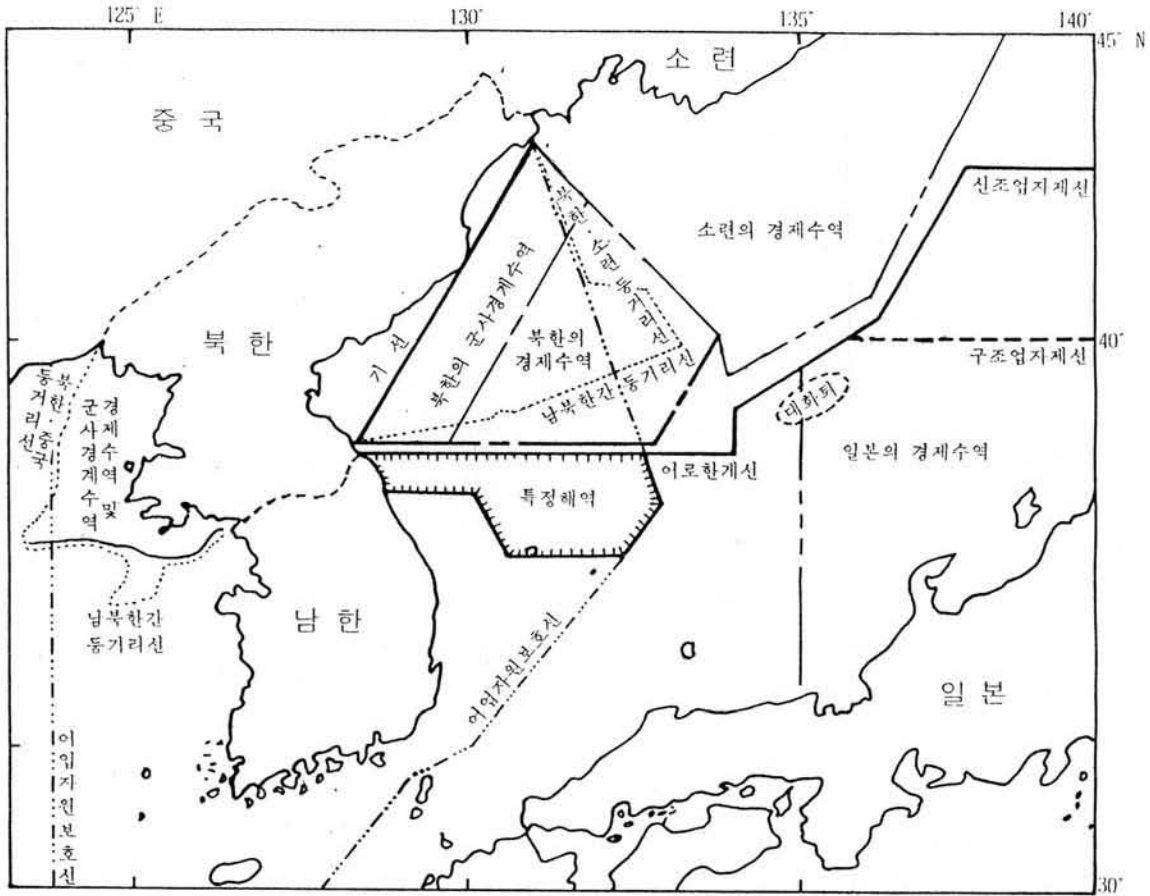
짓고, 나아가서는 對外 및 對南政策과 관련하여 정세 발전에 적응하고, 東海 및 黃海에서의 主權行事を 정치·군사적으로 합리화 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北韓의 EEZ 제도는 그 범위와 경계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추정되고 있을 따름이며, 내용상으로도 상당한 법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EEZ 내에 軍事境界水域을 별도로 설정한 점, 두만강 입구의 나주리로부터 강원도 평성까지의 東韓灣 전체에 258해리에 달하는 直線基線을 채용한 점, 경계 확정 과정에 隣接國 또는 對向國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점 등은 國際法上的 慣行을 무시한 처사로서 그 合法性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다만 東海에 있어서 蘇聯과의 사이에만 1986년에 「經濟水域 및 大陸棚의 境界에 관한 條約」을 체결하여 그 경계를 公式化 하였을 뿐이다. 黃海에 있어서의 基線은 干潮線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 中國과의 경계는 바다 半分線으로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획선을 하지 않았으며, 黃海의 EEZ 全域을 軍事境界水域으로 선포하는 등 그 합리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日本의 排他的 漁業水域

日本은 自國漁船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水域에 대하여 美國과 蘇聯 등 關係沿岸國들이 200해리 EEZ를 선포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自國漁船이 워낙 광범위하게 海外漁場에 진출하고 있는 데다 周邊沿岸國들을 자극하는 것이 결코 國益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그 선포의 결단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만약 蘇聯漁船이 일방적으로 北海道近海에까지 出漁하는 날에는 손실이 클 것이므로 1977년 5월 「漁業水域에 관한 暫定措置法」을 공포하여 200해리 EFZ를 설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日本의 漁業水域法은 처음에는 日蘇漁業會談에 있어서 對蘇協商用으로 의도되었던 것이지만 이 법률이 여타 周邊國들과의 漁業關係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일본은 이 EFZ 선포 과정에서 韓國, 中國, 臺灣의 3국을 자극함으로써 이들 沿岸國들도 EEZ 또는 EFZ를 선포하는 날에는 得보다 失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동경 135°以西의 東海와 九州, 琉球列島에 이르는 領海 밖의 水域(黃海 및 東中國海)은 EFZ 設定水域에서 제외하였고, 韓國과 中國에 대하여는 EFZ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유보하고 있다.



<그림 1> 韓半島 부근에 있어서의 北韓·日本·소련의 經濟水域

### III. 韓國과 日本의 漁業關係

#### 1. 漁業紛爭과 平和線의 宣布

日本의 漁船團은 2차 世界大戰 전부터 세계 도처에 진출하였으며, 그들의 활동은 各沿岸國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를 야기시켰다. 그러다가 終戰과 더불어 日本에 진주한 聯合軍은 1945년 9월, 日本 周邊水域에 소위 McArthur Line을 설정하고 日本漁船이 그 線 밖으로 진출하는 것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McArthur Line이 철폐되면 다시 海外漁場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으

로 1952년 4월 聯合國은 對日平和條約을 체결하면서 그 제9조에서 日本으로 하여금 利害當事國과 漁業協定을 체결할 책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日本은 美國과 캐나다에 대하여는 「抑制의 原則」(principle of abstention)을 수용하여 동경 175° 以東의 水域에서는 연어와 송어 어업을 자제한다는 내용의 「美加日漁業條約」을 체결하게 되었다.

對日平和條約의 當事國은 아니지만 條約 제9조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韓國은 1951년 10월 日本에 대하여 漁業協定 체결을 제의했으나 成事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韓國으로서는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平和條約의 발효와 더불어 日本漁船이 대거

진출해 올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漁業資源과 어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1952년 1월 이른바 平和線으로 불리우는 「隣接海洋의 主權에 대한 大統領宣言」을 선포하였다. 平和線 선포 이후 韓日間에는 그것의 合法性에 관한 논쟁과 韓國의 日本漁船 단속에 따른 분규가 끊이지 않았는데, 日本은 公海自由의 原則에 입각하여 平和線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으며, 韓國은 平和線의 설정이 美國의 「Truman 宣言」과 같은 국제적 先例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는 동안 日本漁船은 平和線을 계속 침범하였으며, 1965년 韓日漁業協定이 체결될 때까지 나포된 어선이 327척이었고 억류되었던 선원은 3900명에 달하였다.

## 2. 漁業協定の 締結

漁業에 관한 韓日間의 協商은 1952년 2월부터 시작된 韓日會談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였으며, 14년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1965년 6월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이 서명되고, 같은 해 12월에 批准書를 교환함으로써 이 協定은 발효되었다. 前文과 本文 10개조 및 附屬書로 구성된 韓日漁業協定の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兩國은 領海基線에서 12해리까지의 어업에 관한 모든 管轄權을 排他的으로 행사하는 漁業專管水域을 설정하고, 그 외측에는 共同規制水域을 두어 漁業資源의 持續的 生産性을 확보하기 위한 漁業規制措置를 취하기로 했는데(제2조), 이 水域內에서의 연간 총어획량은 15만M/T으로 정하고 10%의 可變性을 부여했다. 또 共同規制水域 外측에는 共同資源調査水域을 설정하되(제5조), 水域의 범위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共同委員會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 水域은 당초 韓國이 協定上에 平和線의 형태를 남겨두기 위해 共同規制水域의 外측으로부터 平和線까지의 水域을 資源調査水域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했으나, 日本이 協定 內에 平和線을 표시하는 어떠한 형태의 水域도 반대하고 그 대신 共同調査水域을 설정하여 魚族資源에 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資源保存措置를 취할 것을 수정 제의하여 합의된 것이다.

漁業專管水域內에서의 犯法漁船에 대한 團束과 裁判管轄權은 沿岸國이 排他的으로 행사하며, 共同規制水域에서의 團束과 裁判管轄權은 旗國主義原則에 의하도록 하였다(제4조).

또한 同協定の 운영을 위하여 兩國政府가 임명하는 3

인씩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共同委員會를 두기로 하였고, 協定の 해석과 시행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으며(제6조),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仲裁委員會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한편, 이 委員會가 내린 결정은 兩國政府가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協定の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5년간이며, 그 후에는 어느 一方國이 他方締約國에 대하여 協定終了의 의사를 통고하는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기로 하였다. 이 協定은 계속 갱신되어 지금도 그 효력이 존속되고 있다.

## 3. 協定締結後 漁業關係의 變化

### 1) 韓國漁業의 發展

協定の 발효 후 兩國間의 漁業紛爭은 점차 감소하였고 漁業秩序는 차츰 안정되었다. 이와 함께 韓國의 어업이 급격히 성장하여 1961년에 어획량이 46만M/T으로 세계 19위이던 것이 10년 후인 1971년에는 74만M/T으로 1.6배로 성장하여 세계 16위, 20년 후인 1981년에는 237만M/T으로 5.2배로 성장하여 세계 9위, 25년 후인 1986년에는 310만M/T으로 6.7배로 성장하여 세계 7위라는 水産大國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漁業이 신장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政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과 企業家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주로 日本으로부터서의 漁撈裝備과 新技術의 도입, 질적 양적으로 향상된 水産技術人力의 양성 등에 기인하지만, 한편으로는 韓日漁業協定 체결에 따른 水産行政機構의 개편, 對日請求權資金 및 漁業協力資金의 도입을 통하여 生産基盤이 대폭 개선된 것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즉, 韓日漁業協定은 그 자체가 韓國의 漁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制度的인 再編成과 漁業生産基盤을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도약을 위한 促進劑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2) 北海道 및 濟州道 周邊水域에서의 操業自律規制

1977년 들어 韓日間에 새로운 漁業紛爭이 발생하여 韓日漁業協定이 일부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1960년대 말부터 北太平洋漁場에 출어하기 시작한 韓國의 트롤 漁船團은 주로 베링해나 캄차카반도 근해에서 조업했으나, 1977년 蘇聯이 200해리 EFZ를 선포하자 이 水域으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중 500~5000톤급 어선 32척이 北海道 周邊水域으로 이동

하여 日本의 트롤어업 禁止區域內에서까지 조업함으로써 兩國間에 漁業紛爭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日本은 自國漁民들이 준수하고 있는 日本의 국내적 조치인 트롤어업의 禁止區域內에서의 어로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던 바, 이에 대한 韓國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同水域이 韓日漁業協定上의 協定水域이 아니며, 日本의 요구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兩國의 友好關係를 고려하여 韓國은 自律規制를 시행할 용의가 있음을 제시하고, 그 대신 日本도 이에 상응하는 規制措置를 濟州道 周邊水域에서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3월부터 1980년 10월에 걸친 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3년간의 유효 기간으로 韓國이 北海道 周邊水域에서의 출어 척수를 17척으로 제한하며, 日本은 濟州道 周邊水域에서 底引網漁船數를 協定上의 270척에서 106척으로 감축하고 同時最高出漁隻數를 66척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 제1차 約定의 유효 기간은 1983년 10월말에 만료되었으나 그 후 4차에 걸쳐 갱신되어 1991년 4월까지 存續期間을 연장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 IV. 中國과 日本의 漁業關係

##### 1. 背景

黃海와 東中國海는 전통적으로 西日本漁民들의 중요한 어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945년 이후는 McArthur Line의 설정으로 어려웠던 때도 있었으나, 1952년 平和條約 체결로 海外漁場 進出封鎖가 해제되자 이 어장에의 진출이 재개되었다. 한편 中國은 1949년 中共政權 수립과 더불어 漁業의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함과 동시에 漁業을 규제하기 위한 法律制度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1950년에는 黃海와 東中國海에 트롤어업 禁止區域(일명 毛澤東 Line)을 설정하고 이 水域內에서는 内外國漁船의 트롤어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日本漁船이 中國沿岸까지 출어하여 트롤어업 禁止區域을 침범하자 中國은 1950년 12월부터 나포를 시작하였고, 1955년 日中民間漁業協定이 체결되기까지 나포된 어선은 158척이었고 선원은 1909명이었다. 그러자 日本의 水產業界는 中國沿岸에서의 안전 조업과 漁業協力關係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관계 개선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3년

韓國戰爭의 휴전이 성립된 후 中國으로서도 日本과 정치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日本의 漁業技術을 도입하여 自國漁業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兩國間의 漁業紛爭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10월부터 시작된 民間次元의 대화를 통하여 1955년 4월 日本의 日中漁業協議會와 中國의 漁業協會 사이에 民間漁業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漁業關係를 구축하였고, 이 協定을 통하여 日本은 「毛澤東 Line」을 공식 승인한 결과가 되었다.

##### 2. 民間漁業協定

1955년에 체결된 民間漁業協定은 協定期間을 1년으로 하였으나, 1956년과 1957년 두차례에 걸쳐 연장되었다. 그 후 兩國間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中國은 同協定의 연장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漁業禁止區域 등의 규제 조치 위반을 이유로 日本漁船을 다시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日本은 「漁撈活動에 관한 暫定規則」을 제정하여 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公式協定 없이도 5년간 「毛澤東 Line」이 잘 준수되었다. 이러한 日本의 自制措置를 中國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제2차 漁業協定이 1963년 11월 北京에서 체결되었다. 이 協定에서 中國은 기존의 漁撈區域을 다소 조정하였는데, 이것은 「毛澤東 Line」의 일부 수정과 1958년의 12해리 領海宣布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1965년 12월에 다시 체결된 제3차 民間漁業協定에서는 日本漁船에 대하여 漁具의 網目 크기와 조업 척수에 있어서 보다 많은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1975년 政府間漁業協定으로 발전될 때까지 6회에 걸쳐 연장 운영되었다.

##### 3. 政府間漁業協定

中國이 他國과 체결한 漁業協定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75년 8월 15일 日本과 체결한 日中漁業協定으로서 이것은 과거에 체결되었던 民間協定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양자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쌍방은 協定水域內에서의 漁業資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조업을 규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協定違反에 대한 단속 절차는 旗國主義에 의하기로 한 것(協定 제3조)과 漁業共同委員會를 설치할 것을 규정(協定 제6조)한 것이다. 또 쌍방은 自國漁船에 대하여 항해와 조업의 안전, 질서 유지와 해상사고의 원만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쌍방간에 他方



締約國 어선의 緊急避難權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 協定은 附屬書에서 中國은 領海基線으로부터 100~150해리의 水域에 걸쳐 2개의 底引網休漁區, 3개의 底引網保護區 및 旋網保護區와 600마력 초과 機船底引網漁船의 操業禁止區域을 설정함으로써 海洋管轄權의 확대를 시도하였는데, 그 외곽선은 韓國 및 日本과의 대략적인 中間線에 해당된다.

日中漁業協定은 주로 日本漁船의 조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韓日漁業協定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日本은 이 協定을 통하여 中國近海漁場에서 안정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兩國間的 漁業紛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V. 日本과 蘇聯의 漁業關係

### 1. 背景

日本과 蘇聯의 漁業關係는 1750년대부터 日本이 庫頁열도의 감차카반도 沿岸水域에서 어장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政府間的 관계는 1850년 露日戰爭 이후 日本이 러시아 領海에서 漁業權을 가지는 日露漁業協定の 체결로 시작되었고, 제1차 世界大戰 후에는 蘇聯의 革命政權 정착 후인 1928년에 새로운 日蘇漁業協定을 체결하였다.

그 후 蘇聯 沿近海水域에서의 兩國의 漁業實績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제2차 世界大戰에서 패하고 蘇聯沿岸에서의 漁業權을 상실한 日本은 조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다가 1952년 平和條約 체결 후 蘇聯近海의 公海上에서 새로운 어장이 개발됨에 따라 다시 어획량이 증가되었고, 특히 1952년에 3만 6천M/T이던 연어·송어의 漁獲實績이 1955년에는 17만M/T으로 급격히 신장되었다. 이에 蘇聯은 연어·송어의 남획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56년 3월 호호츠크해를 비롯한 광범한 公海水域에 대하여 指定海域을 설정하고, 그 海域에서의 外國漁船의 조업을 규제하는 소위 Bulganine Line을 선포함으로써 북태평양에 있어서 日本의 어업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蘇聯의 일방적인 규제는 결국 日本으로 하여금 漁業交渉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바, 1956년 5월에 日蘇漁業協定이 체결되었다. 이 協定에 의거 매년 日蘇漁業委員會는 協定水域에서의 연어의 어획 키타를 日本에 할당하도록 하였으며, 청어와 게에 대하여도 稚魚捕獲禁止

및 漁具規制를 행하였다. 이 당시 兩國間에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魚種은 연어였는데, 協定締結 당시인 1956년에 배정된 키타 6만 5천M/T은 그 전년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日蘇漁業關係도 蘇聯近海水域에서 日本의 漁業이 규제받는 차원에서 성립되었다.

### 2. 1970年代 中盤以後의 漁業關係

蘇聯이 200해리 EEZ 설정과 관련하여 同水域內에서의 外國漁船의 조업은 漁業協定에 의거 어획 키타를 배정받아 행해져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日本은 다시 漁業交渉을 서둘러 1977년 7월에 새로운 日蘇漁業暫定協定을 체결하였다. 이에 日本도 蘇聯을 겨냥하여 1977년 5월 「漁業水域에 관한 暫定措置法」을 공포함으로써 200해리 EFZ제도를 12해리 領海와 함께 同年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77년에 체결된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으로 蘇聯의 EEZ 내에서 日本漁船의 조업을 규제하는 것이며, 兩國은 상호의 漁業水域에서 매년 漁獲 키타를 배정받아 조업하게 되었으나, 協定締結 후 日本은 키타 확보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종래의 漁業協定에서는 연어, 송어, 게, 청어 만이 규제의 대상이었으나, 1977년의 協定에서는 전체 魚種에 대하여 키타를 배정받게 하였고, 특히 연어와 송어에 대하여는 1978년에 별도로 체결한 「日蘇漁業協力協定」 및 「日蘇間의 연어·송어 議定書」에 의거하여 特別規制를 받게 된 것이다.

< 표 1 > 日蘇間 漁獲 키타의 變遷 (단위: 천M/T)

연	도	19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蘇聯水域內	日本側	455	850	750	750	750	750	750	700	600	150
日本水域內	蘇聯側	335	650	650	650	650	650	650	640	600	150

1977년 이후 兩國間에 상호 배정한 어획 키타의 推移(표 1)를 보면 蘇聯의 EEZ 선포 이전에 蘇聯水域에서의 日本의 年間漁獲量은 150만M/T 수준이었으나, 선포 후의 키타는 그 절반 수준에 그쳤고, 특히 主對象魚種인 명태는 100만M/T 수준에서 30% 정도인 29만M/T으로 감소되었다. 반면에 蘇聯은 종래의 최고 漁業實績이 66만 5천M/T으로서 主對象魚種인 고등어, 정어리 어획량 50만M/T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실적은 漁獲 키타에서 획득하였다.

漁獲 키타에 대한 兩國의 기본 입장은 日本이 實績主義를 주장하는 데 반하여 蘇聯은 等量主義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兩側의 상반된 입장은 협상을 어렵게 하였는데, 결국은 蘇聯側의 주장이 반영되어 1985년에는 쿼타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1986년에는 더욱 격감되어 전년의 25% 수준으로 되었고, 底引網漁業 및 底層 트롤어업이 각각 전면 또는 일부 금지되고 入漁條件도 악화되었다.

특히 蘇聯은 제12차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첫째인 1986년부터는 全產業에 대한 經濟効率化政策으로 「自國資源 自國消費의 原則」이 강하게 작용하여 動物性 蛋白質 供給源으로서의 漁業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부터 견지해 온 等量主義原則과 더불어 장차 漁業資源管理에 있어서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VI. 北韓과 日本의 漁業關係

北韓이 1977년 8월 東海와 黃海에 200해리 EEZ와 50해리 軍事境界水域을 선포함에 따라 日本은 종래부터 조업해 오던 기존 어장의 확보 문제에 관하여 北韓과 협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9월 평양에서 北韓의 東海水產協同聯盟과 日本의 日朝漁業協議會 사이에 민간 차원의 「日朝漁業協力에 관한 暫定合議書」가 체결되었다.

이 合議書의 주요 내용은 日本漁船의 操業範圍를 軍事境界水域 밖의 EEZ 내로 한다는 것, 漁船의 規模는 200톤 이하로 한다는 것, 有効期間은 1977년 7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는 것, 日本은 北韓이 操業技術과 漁業機資材를 도입하는 것에 협력한다는 것, 그 외에 상대방 어선의 安全保障과 緊急救護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이 合議書는 1978년 7월부터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됨과 동시에 北韓漁船의 日本 EFZ(태평양 쪽 제외)에의 入漁權을 추가로 명문화 하였으며, 1980년에 다시 2년간 연장하였다. 그러다가 1982년 6월, 北韓은 이 合議書의 當事者인 東海水產協同聯盟 명의로 담화를 발표, 「쌍방간의 선린 관계를 고려, 재연장 문제의 타결을 위해 선의의 아량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유효 기한을 그대로 넘기게 되었다」고 日本側을 비난하면서 北韓 EEZ 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철수를 요구함에 따라 日本은 부득이 同水域에서 철수하였다. 그러다가 1984년에 다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北韓이 日本의 명태 수입 쿼타를 5만M/T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日本이 거절함으로써 1986년에 다시 소멸되었다.

그후 1987년 12월부터 1989년 말까지 유효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入漁料를 지불하고 조업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즉, 이 合議書에 의거 日本에 대하여 개방하는 魚種은 명태, 연어, 오징어, 게 등으로 하며, 兩國은 合作會社를 설립하여 合作事業에 의한 漁獲物 중 명태는 M/T당 176\$에 日本이 구매하기로 하였다. 또 오징어 어업의 入漁料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北韓은 漁獲量의 30%를 入漁料로서 요구했으나 日本은 국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2%를 주장하다가 결국 美國產의 시세보다는 상당히 높은 M/T당 66\$로 합의하였다. 流刺網과 延繩에 의한 연어 漁業의 入漁料는 M/T당 230\$로서 이것은 연어 樣殖에 필요한 시설 지원으로 대치하기로 했으나, 게 漁業의 入漁料는 兩側의 의견차가 너무 커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北韓은 漁業을 대외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서 명태 외에는 고정된 쿼타를 정하지 않고, 漁船의 크기와 척수 그리고 漁期와 漁法 등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慣例에 따랐다. 이 合議書에 의해 入漁가 허가되는 日本漁船의 크기는 200톤 이하였으며, 연어 漁業의 漁期는 3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그리고 漁船數는 流刺網漁船 41척과 延繩漁船 30척으로 하였고, 오징어 漁業의 漁期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漁船數는 679척으로 하였다.

北韓은 1989년 11월에 이 合議書를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漁獲量 보고의 부정확성, 養殖施設 도입에 대한 日本의 비협조 등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VII. 北韓과 蘇聯의 漁業關係

北韓과 蘇聯의 漁業協力關係는 1956년에 「太平洋 西北水域의 水產資源 利用에 관한 協定」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 協定에 의거 1961년부터는 北韓漁船이 오후츠크레에 진출하였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협력 상대국이다.

1974년에는 10년간의 長期漁業協定을 체결함으로써 共同漁撈와 技術協力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1976년에 蘇聯이, 1977년에 北韓이 각각 200해리 EEZ를 선포함에 따라 1977년 7월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漁業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여태까지는 규제가 없었던 蘇聯 EEZ 내에서의 北韓의 어로 활동에 제약이 가해져, 漁船의 規模는 대형 트롤선 6척과 중형 어선 10

적, 그리고 漁獲량은 연간 20만M/T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다가 兩國이 선포한 EEZ의 경계에 관한 상호의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1986년 1월 「經濟水域 및 大陸棚境界에 관한 條約」을 체결함으로써 東海에 있어서의 漁撈 및 探查活動時의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共同漁撈作業과 海底資源探查 및 開發事業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兩國은 매년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번갈아 漁業共同委員會를 개최하여 水産分野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왔으며, 1988년 3월에는 평양과 모스크바에 각각 水産代表部를 설치하는 등 협력 사업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 VIII. 韓國과 中國의 漁業關係

黃海와 東中國海 어장은 과거에는 日本의 독무대였으나 1950년대 이후 韓國과 中國의 漁業活動이 활발해지면서 완전히 三巴戰으로 발전하여 복잡한 역학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선 韓國과 中國 사이는 韓國戰爭을 통하여 정치적인 敵對關係에 있었으므로 漁業關係에 있어서도 미묘하였다. 즉, 中國은 1950년에 「毛澤東 Line」을 설정함으로써 自國의 近海漁場을 排他的으로 管轄하기 시작했고, 韓國도 주로 日本에 대한 漁業資源 防禦線으로서 平和線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外國漁船의 조업을 규제하였다. 그런데 1965년에 韓日漁業協定이 체결됨으로써 이 平和線이 對日防禦線이라는 의미는 사실상 소멸되었지만, 여타 국가에 대하여는 아직 法的 効力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때 中國에 대한 防禦線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中國漁船의 침범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1975년 日中漁業協定 체결을 즈음하여 中國은 韓國漁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1975년 이전에 10척 그리고 그 이후에 8척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모두 귀환되었으며, 1980년 이후에는 나포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韓國은 이러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의를 요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中國이 응해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 漁船團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5년 1월 水産廳 訓令으로서 「水産業에 관한 許可事務 取扱規則」을 제정, 日中漁業協定線에서 동쪽으로 위도 30' 내지 90'의 간격을 두고 操業自制線을 설정하였으며, 이 선은 日中漁業協定상의 資源保護區 및 休漁區 등과 대략 15'

정도의 緩衝海域을 둔 것이었다.

이 操業自制線은 1976년 7월의 「東支那海 安全操業을 위한 指導指針」과 8월의 「黃海 및 東支那海 出漁船에 대한 規制事項告示」로써도 추진되었고, 이 선에서 동쪽으로 경도로 40' 정도 되는 곳에 船團編成 強化線을 설정하여 조업을 자율적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다가 1979년 1월에 日中漁業協定이 개정되면서 保護區가 신설 또는 확장됨에 따라 外務部의 요청으로 操業自制線을 경도 20' 동쪽으로 이동 설정함으로써 그 만큼 어장이 좁아졌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兩國間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沿近海漁業資源의 고갈로 漁業經營收支가 악화되어 어장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1985년 10월, 水産廳告示(沿近海漁船의 安全操業을 위한 規制事項)에 의하여 操業自制線을 경도 10' 서쪽으로 이동시켜 保護區 및 休漁區와의 사이에는 경도 5' 정도의 緩衝海域을 두었다가, 1989년 4월에는 역시 水産廳告示로 操業自制線을 資源保護區 및 休漁區의 외곽선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韓國이 操業自制線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日中漁業協定水域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라기보다는 兩國間의 力學關係가 단순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한 정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兩國間의 관계가 다소 우호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漁業關係도 개선되어 1989년 12월에는 韓國의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와 中國의 東海漁業協會 사이에 「漁船 海上事故 處理에 관한 合議書」가 체결되어 199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公海上에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兩國의 어선과 漁具에 관련되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指針을 정한 것이지만, 兩國間의 漁業關係가 개선되고 있는 증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표 2 > 中國漁船의 韓國領海에의 緊急避難實績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척수	785	1562	1703	2381	2026	3258	2295	3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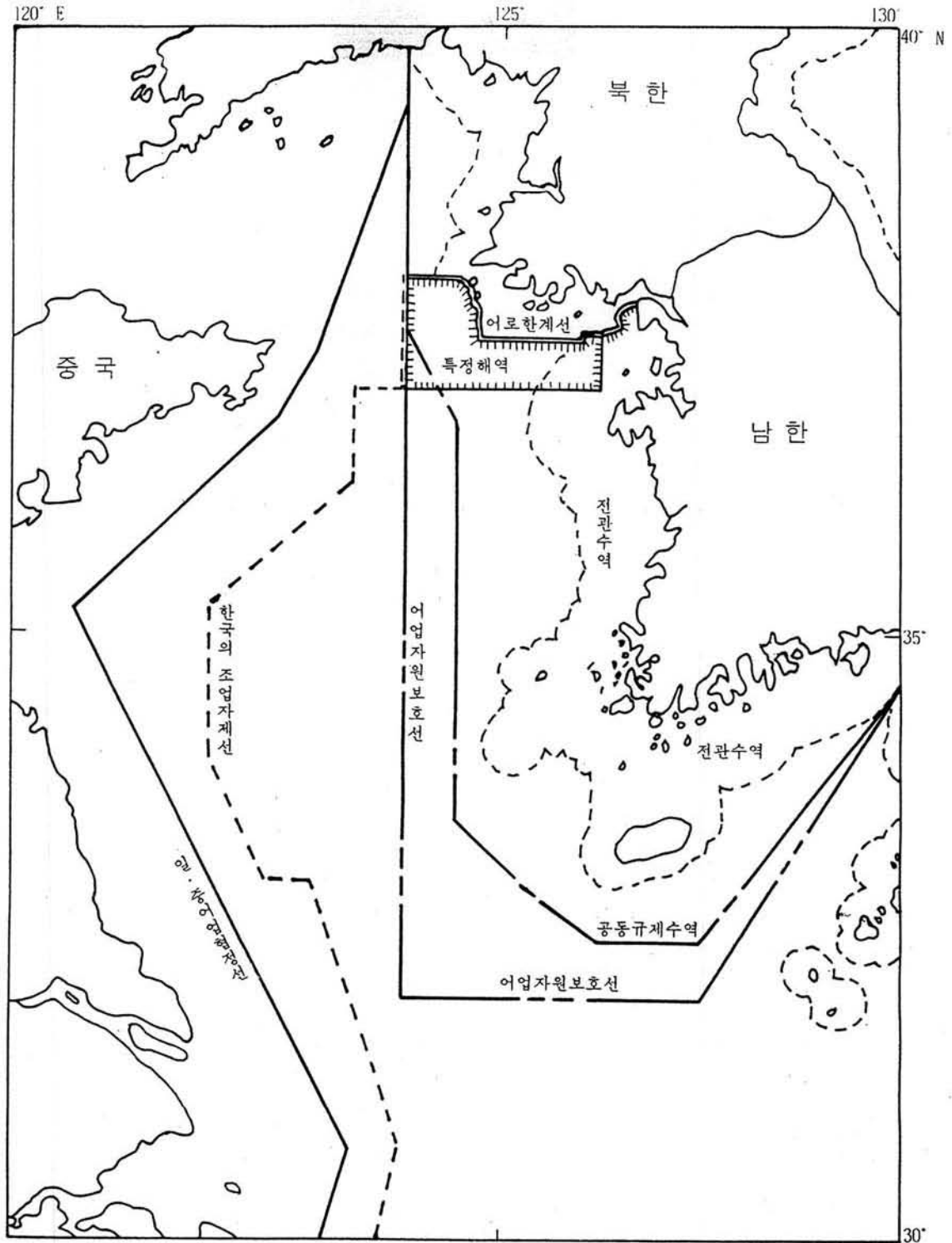
자료: 海洋警察隊

또한 中國漁船이 韓國의 인근 어장에서 조업 중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韓國領海에 緊急避難해 온 실적(표 2)을 보면 그 척수가 매년 증가하여 1988년에는 3651척이나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 만큼 中國의 沿近海漁船이 수적으로 증가하였음과 더불어 遼海로 진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兩國間에 장차 漁業水域에 관하여 발생할 것



韓半島 周邊水域의 國際漁業關係와 그 展望



<그림 2> 中國-日本과의 漁業協定水域 및 韓國의 操業自制線과 北方漁撈限界線

으로 예상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漁業協定을 체결하는 등 兩國漁業關係의 정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X. 南北韓間의 漁業關係와 韓國의 自律規制

北韓當局에 의한 韓國漁船의 被拉事件은 停戰後 계속 자행되어 왔고, 1954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軍事分界線 근해의 어장에서 조업 중 被拉되었던 어선은 458척, 선원은 3633명이나 되었으며(표 3), 이러한 사건은 항상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긴장을 야기시켜 왔다.

韓國은 어선의 被拉防止를 목적으로 1964년 6월 「農林部例規 제32호」에 의거 처음으로 北方漁撈限界線을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軍事分界線에 맞추어 東海에서는 북위 38° 35' 45"에서 正東으로 그은 선으로, 黃海에서는 江華島 서북단에서 시작하여 불규칙적인 경로를 거

쳐 그 북쪽 한계는 북위 38° 03'에서 正西로 그은 선으로 하였다. 그리고 1967년 12월에는 漁撈限界線 남쪽의 일정 水域에 特定海域을 설정하여 이 어장에 출어하는 어선은 반드시 船團을 편성하고 出漁申告를 해야 하는 등의 통제를 가하였다. 漁撈限界線은 그 동안 사태의 악화에 따라 가장 심할 때는 5~7해리나 南下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 긴장 관계가 다소 해소됨으로써 현재는 北上 조정하여 軍事分界線과의 거리는 3해리 정도로 좁혀졌다(표 4참조).

1970년대에 들어서 東海 중심부의 大和堆를 중심으로 한 일대 해역에 풍부한 오징어 어장이 발견됨으로써 韓國漁船團이 이 어장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蘇聯과 北韓의 잇따른 200해리 EEZ 선포로, 비록 大和堆가 그 水域內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韓國漁船團의 활동이 그들 국가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 불안해졌으므로 1978년 5월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명의로 大和堆漁場 부근에 操業自律規制線을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80~81년에는 이 어장에서도 어선 被拉事件이 발

<표 3> 韓國漁船의 拉北 및 歸還狀況(1987년말 현재) (단위: 어선 척수/선원수)

구 분	拉 北			歸 還		
	계	東 海	黃 海	계	東 海	黃 海
연 도						
1954~59	92/625	22/134	70/491	89/590	21/118	68/472
1960~69	309/2173	119/914	190/1259	290/1943	115/836	181/1107
1970~79	47/674	21/410	26/264	38/534	20/391	18/143
1980~87	10/161	2/54	8/107	9/148	2/54	7/94
계	458/3633	164/1512	294/2121	426/3215	154/1347	272/1761

자료: 海洋警察隊

<표 4> 北方漁撈限界線의 變遷

근 거	일 자	東 海	黃 海
農林部 例規 32호	'64. 6. 29	38° 35' 45" N	軍事分界線과 동일
水産廳 訓令 46호	'67. 12. 5	38° 34' 45" N (特定海域 설정)	38° 02' 00" N (特定海域 설정)
內務, 國防, 農林 合同告示	'68. 11. 25	약 5마일 남하	
內務, 法務, 國防, 農林 合同告示	'69. 3. 10		약 5~7마일 남하
內務, 法務, 國防, 農林 合同告示	'69. 4. 14		강화도와 석모도간의 일부 어장 개방
國務會議 議決	'71. 5. 10	(盛漁期 漁撈許容線 설정)	(盛漁期 漁撈許容線 설정)
船舶安全操業規則	'72. 4. 17	38° 30' 00" N	
船舶安全操業規則	'80. 7. 18		漁撈限界線 연장
船舶安全操業規則	'89. 4. 13	38° 33' 00" N (盛漁期 漁撈許容線 삭제)	연평도 서부어장 남하, 강화도, 만도리어장 북상

자료: 水産廳

생하자 韓國政府는 1982년 4월 船舶安全操業規則(1972년 제정)을 개정하고 大和堆漁場에 操業自制線(북쪽 한계는 북위 40도선)을 설정하였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韓半島 周邊情勢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被拉事件도 줄어들었으며, 沿近海漁業資源의 감소로 어장의 확대가 요망되어 1990년 10월부터는 大和堆漁場의 操業自制線도 북위 40°선에서 42°선으로 120해리 北上시켰다.

이와 같이 韓半島分斷 이후 南北韓間에는 정상적인 漁業關係를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못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차 통일을 위한 前段階로서의 南北韓間의 본격적인 교류 내용 중 漁業協력이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므로 그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韓日漁業協定과 유사한 성격의 南北韓共同漁撈水域을 東海 및 黃海의 軍事分界線을 중심으로 한 일정 해역에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北韓水域의 풍부한 漁業資源을 韓國이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써 쌍방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漁業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X. 結 論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韓半島 周邊水域內의 各沿岸國들은 대체로 自國의 이익과 관련하여 기존의 國際漁業關係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수준에서 상호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韓半島를 중심으로 한 國際政治의 환경이 변화하고 UN海洋法協約이 발효되면, 거기에 따라 域內의 國際漁業秩序도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韓國으로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韓半島 周邊水域에 있어서 國際漁業關係를 검토한 바탕 위에 장래의 발전방향을 전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半島 周邊水域에 구축되어 있는 既存漁業秩序의 성격은 韓日漁業協定, 日中漁業協定, 日蘇漁業協定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日本의 무차별적인 漁業進出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漁業勢力에 대한 周邊國家들의 視覺도 日本과 유사한 차원의 것으로 예견되므로 장차 周邊國과 漁業關係를 수립함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둘째, UN海洋法協約이 발효되고 韓國과 中國이 200

해리 EEZ를 선포하게 되면 기존의 漁業協定들이 상당 부분 國際漁業關係의 일반적 規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므로 韓半島 周邊水域에 있어서의 漁業秩序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현실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韓國도 韓日漁業協定의 개정 또는 폐기에 대비한 대책의 수립에 소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장차 韓中漁業關係를 정립함에 있어서는 黃海 및 東中國海 大陸棚境界 확정 문제와 더불어 兩國間에 海洋管轄權에 관한 상당한 難題가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海洋政策에 관한 中國의 주장인 衡平의 原則과 海洋法의 一般原則이 조화를 이룬 바탕 위에 對向國으로서의 원만한 漁業關係를 정립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韓蘇 漁業關係는 蘇聯水域의 풍부한 漁業資源을 韓國이 유효하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南北韓의 漁業關係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信賴와 共同利益의 차원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共同漁撈水域의 설정과 漁業資源의 保存을 위한 共同對策 수립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對北協商 과정에서 韓國이 어민 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했던 기존의 漁撈界限線이 北韓側에 의하여 管轄海域의 境界線 또는 海上軍事分界線으로 오인되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參考文獻

- 1) 金明基, 海洋法秩序와 南北韓關係, 海洋政策研究, 제 2-1호, 海洋研究所, 1987
- 2) 金榮球, 現代海洋法論, 아세아社, 1988
- 3) 盧明濬, 韓·中共間의 漁業關係 및 大陸棚의 法的地位,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23권, 1978
- 4) 朴椿浩·柳炳華, 海洋法, 民音社, 1986
- 5) 朴惟榮, 韓國과 經濟水域의 問題,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33-2호, 1988
- 6) 安國全, 韓·日·中共間 漁業關係에 관한 研究, 國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 7) 李瑞恒, 韓日漁業協定 20年の 評價,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30-2호, 1985
- 8) 池楨日, 韓·日·美의 漁業關係의 爭點 및 紛爭解決策, 大韓國際法學會論叢, 제23권, 1978
- 9) 池鐵根, 韓日漁業紛爭史, 韓國水產新報社, 1989
- 10) 崔宗和, 韓美漁業關係의 爭點과 法律問題, 수산경

- 영론집, 제21-1호, 한국수산경영학회, 1990
- 11) 咸明澈, 韓國과 UN海洋法協約, 海洋政策研究, 제 2-1호, 海洋研究所, 1987
  - 12) 海洋警察隊, 海難事故統計年報, 1988
  - 13) 日本水産社, 水産年鑑 1977-1980
  - 14) 山本草二, 國際漁業紛爭と法, 玉川大學 出版部, 1976
  - 15) 中井 昭, 北洋漁業の構造變化, 成山堂書店, 1988
  - 16) 長谷川 彰·廣吉滕治·加瀬和俊, 新海洋時代の漁業, 農山漁村文化協會, 1988
  - 17) Choon-ho Park, North Korea's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A Review,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1-1, 1986
  - 18) Young-gyu Kim, Fishing in North-east Asia; What will be Korea's management alternative to depleted shared stock,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86
  - 19) David Fluharty, National Fisheries Policies and Regulations in the sea between Japan, Korea and the Soviet Un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ea between Japan, Korea and the Soviet Union, Niigata, Japan, 1988
  - 20) Shiro Chikuni, Fishery Resources and Fisher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ea between Japan, Korea and the Soviet Union, Niigata, Japan, 1988

## The International Fishery Relationship in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Future Prospect

Byoung-Gee LEE · Jong-Hwa CHOE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shery relationship in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prospected on the reformation of the fishery order which might be followed by mutation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 and by effectu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he future.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shery order in this sea has been constituted on the basis of restricting Japanese indiscriminate fishery expansion.

But, when the South Korea and China proclaim the 200-mile EEZ in the future, a considerable part of existing fishery agreements will forfeit the role as general norms of the international fishery relationship. Accordingly a counterplan against the revision or abrogation of the Korea-Japan Fishery Agreement must be considered. And also a rational fishe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s confronting countries, must be organized.

The South-North Korea fishery relationship must be settled on the basis of co-operation, trust, and common interest. For this purpose, a political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fishery zone arou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on the conservation for the fishery resources must be begun in earnest.